

의안번호	2216332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6. 2. 3.
추계번호	26E033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4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업 경영 및 농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1억원 등 2027~2030년 4년간 총 419억원(연평균 10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2027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313억원(연평균 78억원)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06억원(연평균 27억원) 감소 예상됨
 - 다만, 개정안의 내용 중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부분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본 추계에는 제외함

[표 1] 농업 경영·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세수효과: 2027~2030년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농업 경영·작업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안 제106조제1항제3호)	-81	-95	-112	-131	-419	-105
- 부가가치세(74.7%)	-60	-71	-83	-98	-313	-78
- 지방소비세(25.3%)	-20	-24	-28	-33	-106	-27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항 제3호	○ 농어업 경영 및 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항 제3호	○	- 다만, 개정안의 내용 중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부분은 관련 통계 미집계로 추계 제외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관련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30년까지 기간으로 설정함
- 개정안의 내용 중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부분은 주무 부처(해양수산부)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본 추계에는 제외함
-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 및 실적

-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농어촌 인구 감소·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보완 및 농어업법인 경영개선 목적에서 영농·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임
 - (위탁영농)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작물재배 대행, 축산물 사육 대행을 하는 법인 활동 농작업의 100% 위탁¹⁾
 - (농작물대행)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작업의 일부(100% 미만)인 논

1) 농림축산식품부·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, 「농업법인조사 보고서」(2023년 기준), 2025.5

밭갈기, 작물심기, 농약뿌리기, 가지치기,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 수반 활동²⁾)

□ 농업 경영·작업 대행용역 관련 농업법인 매출액은 2023년 2,094억원 수준이며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(연평균 증가율 17.5%)

○ 다만, 면세사업자인 영농·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 동 제도와 관련한 조세지출 실적이 집계되고 있지는 않음

[표 2]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 현황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위탁영농·농작물대행 매출액	1,518	2,000	2,094	17.5%

주: 1. 「농업법인조사」(농림축산식품부) 상 법인세 신고 자료가 있는 농업법인 중 매출액 신고를 하였거나 유급종사자 1인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기준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나. 추계 방법

□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농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관련 ‘매출액 × 부가가치율 × 부가가치세율(10%)’로 추계

○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매출액은 최근 3년 평균 증가율(17.5%)이 추계기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

○ 농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부가가치율은 농업 부문 최근 3년 평균 수준(20.31%)이 추계기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

－ 한국은행 「기업경영분석」 상 ‘농업’[A01]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 수준 적용

[표 3]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부가가치율: 2022~2024년

(단위: %)

구분	2022	2023	2024	연평균
농업	20.49	18.96	21.49	20.31

자료: 한국은행, 「2024년 기업경영분석」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농림축산식품부·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, 「농업법인조사 보고서」(2023년 기준), 2025.5

다. 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농업 경영 및 농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1억원 등 2027~2030년 4년간 총 419억원(연평균 10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2027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313억원(연평균 78억원)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06억원(연평균 27억원) 감소 예상됨

[표 4] 농업 경영·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세수효과: 2027~2030년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농업 경영·작업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안 제106조제1항제3호)	-81	-95	-112	-131	-419	-105
- 부가가치세(74.7%)	-60	-71	-83	-98	-313	-78
- 지방소비세(25.3%)	-20	-24	-28	-33	-106	-27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